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

1. 대상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AF567

2. 주요 변경 내용 :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 투자위험등급 변경사항 반영(3 등급(다소높은위험) → 4 등급(보통위험))
-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10.17%→14.15%)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내용 반영

3. 변경 시행일 : 2024 년 03 월 20 일

4.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www.hi-asset.com)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구분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및 산정기준 변경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u>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u> 투자위험등급 : <u>3등급(다소높은위험)</u>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u> 투자위험등급 : <u>4등급(보통위험)</u>
요약정보			
투자비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신설	<u>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u> <u>투자위험등급 변경사항 반영(3등급(다소높은위험) → 4등급(보통위험))</u> <u>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10.17%→14.15%)</u> <u>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u> <u>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u> <u>소득세법 개정내용 반영</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실제 수익률 변동성, 투자위험등급 및 산정기준 변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

	경 반영	<p>자위험등급 중 <u>3등급(다소높은위험)</u>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u>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10.17%</u>]</p> <p>※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 (정정 전 1)</p> <p>신설</p>	<p>자위험등급 중 <u>4등급(보통위험)</u>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u>최근 결산일 기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14.15%</u>]</p> <p>※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 (정정 후 1)</p> <p>※ 위험등급변경 내역</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p>나. 환매</p> <p>신설</p>	<p>나. 환매</p> <p>(8)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환매가능 여부</td> <td>중도환매 불가</td> <td>중도환매 시 비용발생</td> <td>중도환매 허용</td> </tr> <tr> <td>-</td> <td>-</td> <td>o</td> </tr> </table>	환매가능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환매가능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나. 과세</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Pe 및 S-p)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p> <p>*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p> <p>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p>나. 과세</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C-Pe 및 S-p)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능)</p> <p>* 분리과세한도 :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p> <p>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재무제표 확정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2. 연도별 설	정에 따른 정	-								

정 및 환매현 황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 적	기 갱신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 항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 용 라. 운용자산 규모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4. 일반사무관 리회사에 관 한 사항	관계사 사명 등 변경사항 반영	가. 회사개요 (2) 2022년 07월 25일부터 회사명 : <u>신한아이타스(주)</u> 주소 및 연락처 : <u>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대로 70</u> 홈페이지 : <u>www.shinhanaitas.com</u>	가. 회사개요 (2) 2022년 07월 25일부터 회사명 : <u>신한펀드파트너스(주)</u> 주소 및 연락처 : <u>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2길28 18, 19, 20층</u> 홈페이지 : <u>www.shinhanfundpartners.com</u>
6. 채권평가회 사에 관한 사 항	관계사 사명 등 변경사항 반영	가. 회사개요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올곡로 88 (☎ 02-399-3350)</u> 홈페이지 : <u>www.keoreaap.com</u>	가. 회사개요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올곡로 75 (☎ 02-2251-1300)</u> 홈페이지 : <u>www.keoreaap.com</u>

(정정 전 1)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 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 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 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주4) 실제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3년(156주, n=156)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n= 155로적용)

※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계산수식 :

$$\sigma = \sqrt{\frac{52}{155-1} \sum_{t=0}^{154} (r_t - \bar{r})^2}, \quad \bar{r} = \frac{1}{155} \sum_{t=0}^{154} r_t$$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5)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6)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7)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8)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9) ELF,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10)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1)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트 tail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5)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6) 종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7)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8) ELF,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구분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및 산정기준 변경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높은위험)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예상액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위험)
투자비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